

---

# 부분디자인 보호 요건에서의 도면에 관한 실무차이 비교 - 한국, 미국, 일본, EU를 중심으로-

---

진 섀 태\*

## 목 차

---

- I. 서론
- II. 부분디자인의 특징 및 도면 해석
  - 1. 부분디자인의 특징
  - 2. 부분디자인에서의 도면 해석 방법
- III. 부분디자인의 정의 요건과 도면
  - 1. 국내외 정의 요건 및 사례
  - 2. 논의
- IV. 부분디자인의 도면표현 요건
  - 1. 국내외 도면표현 요건과 사례
  - 2. 논의
- V. 부분디자인의 단일성 요건과 도면
  - 1. 국내외 단일성 요건 및 사례
  - 2. 논의
- VI. 종합 및 정책방향 제언
  - 1. 종합
  - 2. 정책방향 제언

---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심사관.

##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EU에서 도면과 관련된 부분디자인의 보호 요건과 심사실무의 차이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과 일본의 실무는 유사한 심사기준과 태도를 보였고, 국내에서는 부분디자인의 형식을 전체디자인과 구분하여 정의 요건, 도면표현 방식, 단일성 요건까지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었다. 미국과 EU에서는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융통성 있게 인정하고 도면에 의한 형식적 하자를 거절이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출원인이 보호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사상에 근거함을 유추할 수 있다.

분석결과, 국내의 엄격한 심사태도는 국제적 보호 추세와 동떨어지고, 부분디자인의 본질적 보호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제한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첫째, 정의 요건에서는 “출원인의 창작의도에 의해 창작이 이루어진 부분” 같은 실질적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대해서 형식적 하자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호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단일성 요건에서, 형태적 일체성은 동일한 모티브의 창작범위로 해석하고, 기능적 일체성은 통상적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기능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주제어

부분디자인, 디자인의 보호범위, 디자인 정의, 도면표현, 디자인 단일성

## I. 서론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는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된 창작부가 한 부분에 집중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자동차 디자인의 예를 들면 “범퍼나 라디에이터 그릴, 헤드 램프, 리어램프 등의 디자인에 부분적 변형을 가하는 페이스리프트(face lift)”<sup>1)</sup>를 들 수 있다. 산업계의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부분디자인을 자국의 법제와 등록 요건을 통해 보호하고 있고, 중국,<sup>2)</sup> 호주, 브라질,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에서는 전체디자인만을 보호하고 있다.<sup>3)</sup> 부분디자인을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EU 등이고, 미국은 특허심사기준에 의해 운용하고 있다.

국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2001년 물품에서 부분의 변형에 의한 디자인침해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sup>4)</sup>로 부분디자인제도<sup>5)</sup>가 도입되었다. 부분디자인제도는 전체 형상에서 핵심되는 부분의 창작 관행을 반영하고, 출원인이 디자인침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침해소송 이후 부분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으나, 부분디자인의 보호 요건에서 제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즉, 해외우선권주장에 의한 국내출원 시 국내 등록 요건과 차이가 발생하여 보호받지 못하거나 부분디자인의 유사와 창작성 판단시 명확하지 않은 판단 기준이 문제시되고 있다. 대부분 부분디자인의 도면표현과 해석에 관한 국내외 심사실무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내외 미국, 일본, EU에서의 부분디자인의 정의, 도면, 단일성 요건과 관련한 사례와 실무 차이를 다루고자 한다.

1) 유도현, “자동차 디자인의 패밀리룩 경향에 관한 사례연구”, 디자인학 연구, 제20권 제4호(2007), 174면.

2) 2015년 3월 중국 특허청은 특허법 제4차개정안에서 디자인의 정의를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형상, 모양 또는 그 결합 및 색상, 형상, 모양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미감이 있고 산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전리법 제2조 제4항)”라는 개정안을 공표하여 부분디자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3) 특허청,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제도연구 최종 보고서, 2011, 331면.

4) 노태정·김병진은 “하나의 디자인에서 독창적이고 특징이 있는 창작부분이 복수 포함되어 있더라도 물품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만 인정되기 때문에, 당해 디자인의 한 부분이 모방되어도 디자인 전체로서 모방을 회피할 수 있다면 당해 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해설한다.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326면.

5)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정의규정에서 “물품[물품의 부분(한 벌 물품의 디자인은 제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하였다.

## II. 부분디자인의 특징 및 도면 해석

### 1. 부분디자인의 특징

국내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물품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sup>6)</sup>을 말한다. 물품은 다시 완성품과 부품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분은 여러 부품의 최종결합된 상태인 완성품과 독립된 부품 각각을 가리킨다. 완성품과 부품 모두 독립거래의 가능성이 있고, 외관의 물리적 분리가 가능하여 상거래상 이루어지는 물품구분과 일치한다. 반면,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따라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나누는 것은 창작자나 출원인의 의사가 반영된 권리 구분이라 할 수 있다.

이중 부분디자인 권리는 디자인의 창작적 특징을 세분화하여 독립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를 권리화 할 수 있는 디자인권만의 특수한 보호형식이다. 독립거래가 가능하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품인 경우에도 부분디자인출원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출원공개나 디자인등록 시 전체형상이 공지되기 때문에 선출원의 지위를 가져 보호범위가 넓어지는 효과를 가진다.<sup>7)</sup> 이처럼 부분디자인은 물품 일부분을 보호범위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원인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권리형식이다.

〈표 1〉 상거래관행/보호범위에 따른 디자인의 구분

| 구분          | 종류        | 정의                                                   | 독립거래<br>여부 | 물리적 분리<br>가능성 |
|-------------|-----------|------------------------------------------------------|------------|---------------|
| 상거래<br>관행   | 완성품       | 여러 개 부품이 조합되어 하나의 기능과 용도를 발휘하는 물품                    | 가능         | 가능            |
|             | 부품        | 물품을 구성하기 위해 개별 기능과 용도가 존재하는 구성품                      | 가능         | 가능            |
| 디자인<br>보호범위 | 전체<br>디자인 | 물품 전체의 물리적 형상과 모양을 범위로 하는 디자인권리                      | 가능         | 가능            |
|             | 부분<br>디자인 | 물품에서 창작적 특징이 있고 일정영역을 차지하는 형상이나 모양 일부분을 범위로 하는 디자인권리 | 불가능/가능     | 불가능/가능        |

6)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4부 제1장.

7) “확대된 선출원(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에서는 후출원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의 일부와 동일 또는 유

## 2. 부분디자인에서의 도면 해석 방법

부분디자인에서는 출원인의 창작의도와 전체 외관에서 차지하는 보호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예를 들어 부분디자인의 유사판단은 “전체디자인과 달리 권리주장범위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 간의 형태가 유사한지 여부 외에 위치, 크기, 범위가 추가로 고려”<sup>8)</sup>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도면은 중요한 판단근거인데, 도면상 형상을 인식하는 방법은 화체화 된 면(surface)으로 인식하는 사고와 물화된 덩어리(mass)로 인식하는 사고로 나눌 수 있다. 이 방법은 인간이 형상을 볼 때, 뇌에서 형상을 입체적으로 구조화하여 그 대상을 평면상에 재현하는 방식차이에 근거한다.

그 특징을 보면 첫째, 화체(畵體)적 사고는 면을 기반으로 형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껍데기 같은 여러 개 면이 연속구성되어 전체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내부에 공간을 가지지만, 겉으로는 입체형상을 표현할 수 있어, 3차원 컴퓨터모델링에서는 서피스모델(surface model)<sup>9)</sup>이라고 불리는 방법이다. 둘째, 물화(物化)적 사고는 덩어리를 기반으로 형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내부까지 공간 없이 꼭 차 있어 내외부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인식되는 형상을 말한다. 3차원 컴퓨터모델링에서 솔리드모델(solid model)<sup>10)</sup>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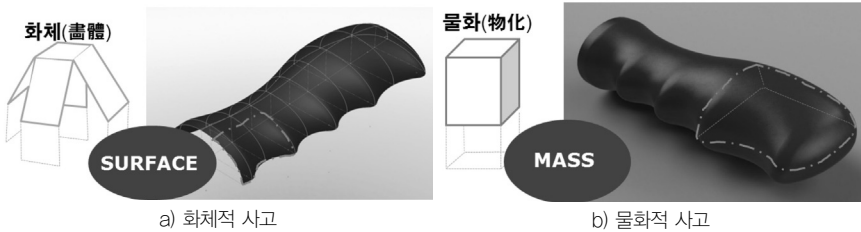
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후출원디자인이 선출원디자인 중 후출원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과 기능 및 용도에 공통성이 있고,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출원디자인 중에 후출원디자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비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때 적용될 수 있다. 2014. 7. 1. 시행된 개정법부터 동일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선출원(디자인보호법 제46조)에서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 간에는 물품이 동일한 경우라도 등록을 받고자 하는 대상 및 방법이 상이한 바 선출원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후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양 디자인은 중복권리라 할 수 없어 후출원에 대해서 선출원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김웅, 디자인보호법 사례연구, 논리와 비판, 2008, 24-26면.

8) 진선태,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에 관한 프레임워크 연구”, 지식재산연구, 제8권 제1호(2013.3), 49-50면.

9) 도면에 표시된 곡면의 3차원 물체를 선으로 표현하는 기법으로 와이어프레임으로 만든 모델 위에 껍질을 씌워 놓은 형태를 말하며, 속은 빈 공간으로 인식된다.

10) 면, 변, 꼭짓점으로 좌표로 인식하여 표현하는 기법으로 모델 내부 전체가 꼭 차 있는 형태로 입체를 구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림 1〉 디자인의 형상인식방법



위의 두 인식방법은 도면에서 부분디자인의 형상을 파악할 때 권리요구부를 판단하는 다른 해석을 만들어 낸다. 즉, 화체적 사고는 물품에 디자인의 창작적 개념이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에 표현된 외관을 보호범위로 인식한다. 반면, 물화적 사고는 물품 전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한 부분을 보호범위로 인식한다. 이 두 방법의 장단점을 보면, 화체적 사고는 눈에 보이는 외관만을 보호범위로 정의하여 즉각적 인식이 가능하지만, 물리적 구분이 모호한 경우 권리요구부의 특징이 명확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반면 물화적 사고는 물리적으로 점유된 디자인보호범위를 인식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출원인의 의도가 담긴 창작부를 보호범위에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표 2〉 부분디자인의 도면해석방법 비교

| 구분         | 디자인보호 관점                                                               | 장점                                   | 단점                               |
|------------|------------------------------------------------------------------------|--------------------------------------|----------------------------------|
| 화체(畫體)적 사고 | -디자인을 화체화된 장식적 외관으로 이해<br>-눈으로 보이는 표면(surface)을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관점          | -디자인 본연의 컨셉 보호용이                     | -디자인 보호범위의 특정불명확<br>-디자인 간 대비불명확 |
| 물화(物化)적 사고 | -디자인을 물품의 한 부분(portion)으로 이해<br>-전체 형상 중 일부분의 덩어리(mass)를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관점 | -물리적으로 점유된 형상구분용이<br>-디자인의 보호범위특정 용이 | -다양한 창작범위의 보호 제한                 |

### III. 부분디자인의 정의 요건과 도면

#### 1. 국내외 정의 요건 및 사례

국내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부분디자인의 정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분디자인은 “물품의 부분의 형태라고 인정될 것, 물품의 형상을 수반하지 않은 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만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물품 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 다른 디자인과 대비함에 있어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이 아닐 것”이라 규정한다.<sup>11)</sup> 이러한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실무에서는 부분디자인을 이루는 선, 면, 형태로 표현된 도면이 명확성을 지닌 형상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면이나 형상처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만 보호범위가 특정되어 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한다.

국내 디자인보호법과 법제가 유사한 일본 의장법에서는 부분의장<sup>12)</sup> 정의에 따라 심사기준에서 “물품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당해 물품 전체의 형태 중에서 일정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 다른 의장과 대비함에 있어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sup>13)</sup>으로 정하고 있다. 특허법에 따라 디자인을 보호하는 미국에서는 부분디자인에 대해 특별히 정의하지는 않지만, 명세서와 도면표현에 표시된 권리요구부(claim)와 권리불요구부(disclaimer)로서 부분디자인이 특정된다.<sup>14)</sup> EU에서는 디자인의 정의에서 “물품(product) 그 자체 및/또는 그 장식(ornamentation)의 선, 윤곽(contours), 색채, 형상(shape) 및/또는 재료의 형태로부터 생기는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외관”<sup>15)</sup>이라 정하

11)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4부 제1장.

12) 일본은 ‘의장’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 제8조(한 벌 물품의 의장 제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일본 의장법 제2조 제1항).

13) 일본 의장심사기준 제7부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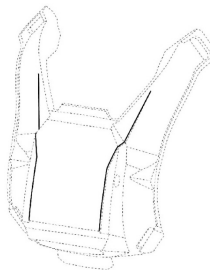
14) USPTO 특허심사기준(MPEP 1503.02)에서는 “도면에서 실선은 청구된 디자인을 도시하는 것이며, 파선은 청구범위를 특정할 목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15)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Article 3.

여 부분디자인을 보호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미국, 일본, EU에서의 부분디자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호흡 마스크용 지지대는 미국에서 특정 굴곡선이 양쪽으로 이어져 이 부분의 보호범위가 인정된 것이다. b) 의자용 받침대는 다리 중간 부분 및 주변부의 윤곽선이 권리요구부로서 인정된 것이다. c) 볼트 머리부는 홈 내부까지 이어지는 단면형상을 보호범위로 본 것이다. d) 자동차 타이어 거치대는 경계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부품으로 특정되어 EU에서 보호범위가 인정된 것이다.

#### 〈그림 2〉 주요국의 부분디자인 인정 예



a) 선으로 표현된 도면<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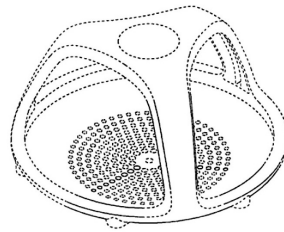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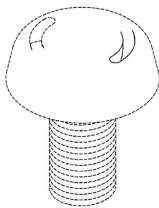


FIG. 1

b) 윤곽으로 표현된 도면<sup>17)</sup>



c) 면으로 표현된 도면<sup>18)</sup>



d) 경계선으로 범위가 표현된 도면<sup>19)</sup>

16) US D690,415 S1.

17) US D679,923 S.

18) 일본 의장등록 JP 1402862.

19) RCD 919592-0002.

## 2. 논의

앞서 미국, 일본, EU 사례에서 선(line), 윤곽(outline), 면(surface), 경계선(boundary)으로 이루어진 도면이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로서 인정되는 것을 보았다. 미국과 EU에서는 부분디자인을 선, 면, 덩어리를 구분하지 않고 창작단위로서 폭넓게 인정하고 있었다. 미국은 디자인특허의 대상에서 “외관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물품의 구성이나 형상, 물품에 적용된 표면장식, 또는 구성과 표현장식의 조합에 관한 것”<sup>20)</sup>으로 보아 장식적 특징을 가지는 다양한 디자인요소를 보호범위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EU에서는 디자인 정의에 포함된 ‘장식(ornamentation)의 선(line), 윤곽(contours)’을 보호하기 때문에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더 광범위해 질 수 있다. 즉 선은 “입체적인 특징이나 디자인의 외곽을 의미하면서, 평면패턴의 선이나 부식가공, 음각, 커팅, 프레스나 레이저로 새겨진 표면으로도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고, 윤곽은 선과 형상을 나타내면서 부가적이고 치장적 요소로서 장식(ornamentation)으로 해석되기 때문”<sup>21)</sup>에 선이나 윤곽만으로도 부분디자인을 구성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내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도면에서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 중 선만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디자인 심사기준의 ‘물품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규정과 상충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굴곡선은 해석에 따라 평면적인 선이 되거나 3차원 좌표값을 가진 입체적인 면이 되기도 한다. 즉, 평면적인 선은 2차원으로서 형상이 될 수 없지만, 입체적인 선은 광의적으로 최소한의 두께를 가진 면으로도 해석<sup>22)</sup>되기 때문에 부분디자인의 정의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이 해석에 따라 부분디자인의 정의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국내 심사실무 및 판결에서는 선만으

20) USPTO 특허심사기준(MPEP) 1502.

21)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The community designs handbook*, 2005, chapter 4, 4-067, 4-068.

22) “물품의 형상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고 물품의 끝단의 외곽으로서 공간과 경계를 이루는 선을 의미한다. 모양은 형상의 표면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을 말하는 것으로 형상의 표면에 나타나지만, 물품 자체가 투명한 경우에는 내부에 모양이 존재할 수 있다.” 조국현, 의장법, 법경사, 2002, 197면. 위 형상의 정의와 달리 선은 단면도를 통해 파악하면 최소한의 두께를 가진 하나의 연속된 면이 존재하는 것임으로 디자인의 정의에서 말하는 ‘형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로 이루어진 부분디자인에 대해서 형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 중이다.

또한, 국내 디자인심사기준에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에 대한 조항은 보호범위 해석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부분디자인은 한 부분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범위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면에서 보호범위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출원인의 영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타 디자인과의 비교 가능한 상태가 전제되어 도면에서 보호범위가 하나로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해 안원모는 “공지디자인과의 대비가능성이라는 요건은 신규성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부분디자인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것”<sup>23)</sup>이라 주장한다. 부분디자인의 정의 요건 단계에서 도면표현의 하자를 문제 삼는 것은 창작성이나 유사판단 같은 실체적 판단을 제한한다는 맥락이다. 정의 규정에서 정한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은 사전적 규정보다는 출원인의 창작의도가 파악된 부분을 디자인 보호범위로 보는 관점 형성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IV. 부분디자인의 도면표현 요건

### 1. 국내외 도면표현 요건 및 사례

#### 1) 부분디자인의 도면표현 방식

부분디자인 도면은 전체 형상에서 차지하는 권리요구부를 전체 형상의 맥락과 함께 표현하여 보호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도면에서는 경계표현, 채색, 선명

23) “다른 디자인과의 대비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당해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서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가능성이 많지만, 부분디자인의 성립 여부를 논하는 시점에는 부분 자체의 형태가 하나의 창작단위를 이루는 것으로 충분하고, 다른 디자인과의 대비가능성은 요건으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 안원모, “부분디자인의 성립 및 등록에서의 특유한 문제점 고찰”, 창작과 권리, 제61호(2010), 47면.

도, 명암표현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선으로 표현된 도면, 일러스트, 사진 등의 도면 성격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이중 일반적으로 “파선을 사용하는 것은 권리범위 내에서 불필요하거나 관련 없는 디자인 특징을 제외함으로써 디자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확장하는 방법”<sup>24)</sup>이다. 부분디자인도면에서는 권리요구부를 나타내는 실선과 권리불요구부와 주변의 사용상태를 보여주는 파선을 기술적으로 사용하여 전략적인 보호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도면 요건과 관련하여 디자인심사기준<sup>25)</sup>에서 도면표현 방법을 정하고 있다. 채색 방법<sup>26)</sup>을 포함하여 여러 부분디자인의 특정 방법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실선과 파선에 의한 방법에 편중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방법을 살펴보면, 주로 도면에서 실선으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권리요구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파선이 사용될 수 있다. 파선은 권리범위에 관련된 환경을 보여주거나 권리범위의 경계를 정의하는 데 쓰이며, 물품이 적용되어 사용되는 상황을 표현해줄 수도 있다.<sup>27)</sup> 컬러도면은 인정되지 않지만, 제출이 인정된 도면은 특정색을 사용하여 권리요구부와 구분하여 표현할 수 있다.<sup>28)</sup>

EU에서 부분디자인은 언어적 방법과 그래픽 방법에 의해 권리로서 특정된다. 언어적 방법은 디자인 일부분을 물품의 명칭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으나, 이 기재만으로는 법적 효과가 없다.<sup>29)</sup> 그래픽 방법에서는 경계부를 실선으로 표

24) Sun, Michael, “The partial design and derivative design patent practices under the R.O.C. (Taiwan) patent reform act”, *Technology law review*, Vol.8 No.1(2011.6), p.231.

25)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하고,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전체형태가 도면에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부분디자인을 특정하는 방법은 실선과 파선, 채색 등의 여러 방법으로 부분디자인의 대상을 도면상 특정하여 구분할 수 있으면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4부 제2장.

26) 2011년 5월 1일 시행된 디자인심사기준개정을 통해 채색, 또는 경계선 등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 정하고 있다.

27) 경계선에 사용되는 파선이 권리요구부의 확장된 영역을 특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선 자체는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권리요구부를 나타내는 실선부위를 지나거나 더 굵게 표현하는 것을 금한다. USPTO 특허심사기준(MPEP) 1503.02.

28) 비공식도면으로 제출된 컬러부분을 최초 출원서에서 권리불요구부(disclaimer)라 명기하면 제외될 수 있으나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컬러부분은 권리요구부(claim)의 필수부분으로 간주된다.

29) 디자인등록 후에 언어적 방법으로 권리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등록권자가 등록디자인 일부분의 표기를 특정규칙에 따라 표시하면 언어적 표기에 의해 가능하고 디자인공보에 의해 공표된다.

현하면 안쪽은 권리요구부이고 바깥쪽은 권리불요구부가 된다. 파선은 비권리 범위를 나타내는 요소로서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권리를 받지 않는 형상에서 제품 자체의 장식 또는 특정한 도면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된다.<sup>30)</sup> 채색과 음영 또한, 도면과 사진에서 보호범위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sup>31)</sup>

일본의 부분의장에서는 출원서, 디자인의 설명,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한다. 이때 디자인의 설명만으로는 부분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고, 참고도가 아닌 본 도면에 표현되어야 한다. 부분디자인의 특정방법은 실선이나 색상 구분을 통해 보호범위를 특정해야 하고, 디자인의 설명에는 부분디자인을 지시하는 표현이 기재되어야 한다.

사례를 통해 부분디자인의 특정방법을 알아보기로 한다. a)는 경계선으로 자동차 엔진부가 보호범위로 표시되었고, b)는 채색으로 표현된 보호범위가 명확하지 않지만, 손잡이 부분이 보호범위임을 파악할 수 있다. c) 술병에서는 선명도차이를 통해 라벨부가 권리요구부라는 사실이 구분되고, d) 자동차 앞부분이 명암차이에 의해 보호범위임이 특정되고 있다. e) 건축 기계에서는 권리불요구부의 내부형상은 생략되고 외곽선만 표현되어 권리요구부와와의 관계를 참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f) 천공기에서 보호범위는 실선으로 표현되고 사람은 사용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부분디자인의 취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sup>32)</sup>

30) OHIM,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n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2014, p.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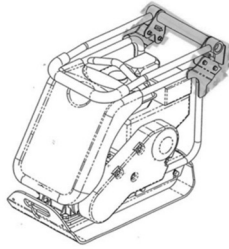
31) 예를 들어 음영차이를 사용할 때에는 명암이 밝은 부분은 비권리범위가 되고, 진한 부분은 권리범위가 된다. 또한, 선명도차이를 이용할 때는 도면이나 사진에서 비권리범위를 흐리게 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32) 미국 디자인특허에서는 특허제도에 의해 보호되어 명세서나 도면에 대한 설명에서 도면의 특수한 설명과 상황이 기재되면 참조하여 디자인권리를 특정할 수 있다. "The broken line showing of the human figure in FIG. 1 is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and forms no part of the claimed design."이라 기재하여 명시된 경우이다.

〈그림 3〉 주요국의 부분디자인 도면표현 예



a) 경계표현<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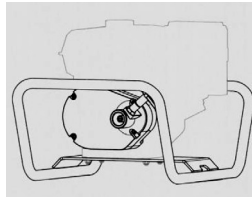
b) 채색<sup>34)</sup>



c) 선명도표현<sup>35)</sup>



d) 명암표현<sup>36)</sup>



e) 권리불요구부생략<sup>37)</sup>



f) 사용상태표현<sup>38)</sup>

## 2) 부분디자인의 경계부표현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의 형상특징에 따라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굴곡이 많거나 면이 겹쳐지는 형상에서는 물리적으로 형상을 해석하여 경계부를 특정해야 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의 경계부가 불명확할 때에도 도면에 특정표현을 요구한다.<sup>39)</sup> 국내에서 부분디자인의 권리요구부를 구별하는 태도는 보호범위를 정하여 타인의 디자인과 침해분쟁시 대비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의장법에서도 디자인심사기준을 통해 국내와 유

33) RCD 2038216-0001.

34) RCD 132659-0001.

35) RCD 222120-0002.

36) RCD 1746728-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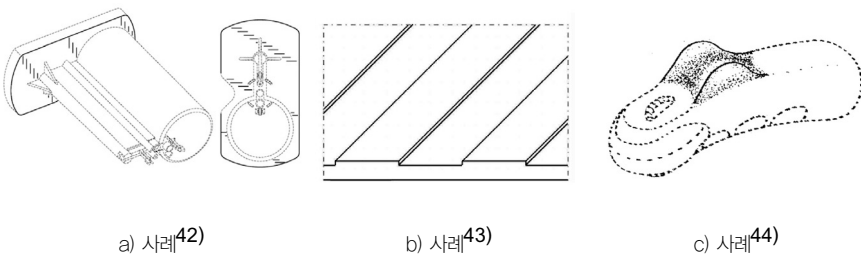
37) RCD 1190193-0013.

38) 미국 디자인특허등록 D528,878 S.

사한 실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sup>40)</sup> 반면 미국, EU에서는 보호범위의 경계부가 모호한 경우에도 실질적 권리범위로 인식되면 도면상 형식적 하자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사례를 통해 보면, a)는 미국에서 실선만으로 경계부가 특정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실선과 파선의 경계부가 모호하여 1점쇄선에 의한 경계부 표시가 요구될 수 있다. b)금속판은 EU에서 일정한 단차면을 가진 형상이 반복되고 1점쇄선은 생략된 경계부로 인식되는데, 국내 심사실무에서는 도면상 하자로 판단한다. 즉, 1점쇄선으로 도시된 측면부는 형상이 완결되지 않아 경계가 불명확한 것으로 해석되어 완결된 측면부 형상표현이 요구될 수 있다. c)마우스는 미국에서 경계부가 음영으로 표현되어 보호범위가 자연스럽게 특정된 경우이나, 국내에서는 음영표현의 사용이 제한적이므로 경계부 특정이 요구된다.<sup>41)</sup>

〈그림 4〉 부분디자인의 경계부 표현사례



39)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경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그 경계를 1점 쇄선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도시하지 않았거나 그에 관한 설명이 인정될 경우에 그 취지를 디자인의 설명란에 적도록 하고 있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4부 제2장.

40) 일본 의장디자인심사기준 부분의장관련에서는 “의장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은 부분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전체의 형태 중에서 일정범위를 점하는 부분, 즉 당해 의장의 외관 중에 포함되는 하나의 한정된 영역이어야 한다.”와 “당해 물품전체의 형태 중에 일정범위를 점하는 부분이어도 다른 의장과 대비함에 있어 대비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장의 창작단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일본 의장심사기준 제7부 제1장)에서는 1점쇄선을 통해 경계부가 표시된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41) 미국 디자인특허에서는 도면에 적당한 표면 음영(surface shading)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간(open area)과 속이 찬 공간(solid area)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적절한 음영표현이 결여되면 표현된 디자인의 형상이나 윤곽의 법적 지위가 부여되지 않는다.

42) US D636500 S1.

43) RCD 1090666-0001.

44) Chin, Kay, H., *U.S. Design patent do it yourself*, Xlibris Corporation, 2005, p.68.

## 2. 논의

앞선 사례에서 보면 EU에서는 다양한 부분디자인의 특정방법이 인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질적 보호범위가 되는 형상표현을 중요시하고 나머지 형상은 보조적 표현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이처럼 미국, EU에서는 선, 윤곽, 면만으로 표현된 부분디자인에서 물리적 경계면이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실질적 보호범위가 파악되면 이를 인정한다. 그 이면에는 출원인이 표현한 부분이 보호범위이고 표현되지 않은 부분은 보호범위가 아니라는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EU 및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저작권적 접근과 무심사주의<sup>45)</sup>에 따라 디자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면에 표현되지 않은 형상은 디자인보호범위에서 제외된 권리라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칙 제4조의 보호 요건<sup>46)</sup>에 따라 디자인의 형상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심사기준 중 “권리불요구부는 다른 디자인과의 신규성 판단에서 고려되지 아니한다.”<sup>47)</sup>라는 규정에서 그 배경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부분디자인 도면 요건에서 거절이유가 자주 발생한다. 심사실무에서 부분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특정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불요구부라 하더라도 도면에 표현되어야 하고, 형상을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체형상 또한 창작성과 유사판단<sup>48)</sup>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형상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 때

45) 프랑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는 무심사주의에 따라 디자인을 보호하는 유럽국가들이다.

46) “부분품이 합성품으로 결합할 때 합성물의 통상 사용과정에서 부품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Article 4). 헤이그합정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제401조에서도 “도면에서 보이는 부분만 보호되므로, 디자인을 최대한 보호받으려는 출원인은 디자인이 완전히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해석해 보면 도면표현은 출원인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물이므로 도면요건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7) OHIM,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n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2014, p.35.

48) 부분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은 디자인심사기준에서 “전체디자인의 용이창작에 관한 판단기준에 따르면, 전체에서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기능 및 용도, 위치, 크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5부 제2장.

부분디자인의 유사판단은 디자인심사기준에서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기초로 ① 디자인

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출원 시 미진한 부분을 보정절차<sup>49)</sup>를 통해 도면상 하자의 치유기회를 주기 때문에 도면보정을 당연시하는 흐름도 한몫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의 보정은 특정부분을 파선 또는 실선으로 상호변경하여 보호범위의 변경이 가능한 절차로서 국내와는 다른 개념이 적용되어 운용되고 있다.<sup>50)</sup>

## V. 부분디자인의 단일성 요건과 도면

### 1. 국내외 요건 및 사례

부분디자인은 전체형상에서 복수의 형상과 모양을 단일한 창작단위로 보아 출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단일성 요건은 국내 디자인보호법에서 제40조 제1항 1디자인1디자인등록출원에서 규정하고 있고, 디자인심사기준에는 부분디자인의 일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sup>51)</sup> 일본에서는 의장법 제7조 1의장1출원에 의한 디자인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다.<sup>52)</sup> 한국과 일본 모두 이 규정에서 형태적 일체성과 기능적 일체성을 부분디자인의 단일성 요건으로 들고 있다.

---

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②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기능·용도, ③ 해당 물품 중에서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크기·범위, ④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한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4부 제6장.

49) “선출원주의하에서 출원 시의 착오나 흠결을 가진 채 출원되는 경우에 그 흠결을 정정,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거절한다면 출원인에게 가혹하고 디자인보호의 취지에 반하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출원서 및 첨부도면 등의 기재사항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출원인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확보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노태정·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535-536면.

50) 그 이유는 출원인이 출원일 기준으로 도면 전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특정영역의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 도면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Chin, Kay, H., *U.S. Design patent do it yourself*, Xlibris Corporation, 2005, p.79.

51) 디자인심사기준에서는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 표현된 경우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취급하나, 다만, 형태적,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 제2부 제3장.

52)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의장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 중 1의장으로 취급되는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의장심사기준 제7부 제1장.

미국 특허법에서 단일성 요건은 기본적으로 복수의 디자인을 출원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1디자인출원에는 1개의 권리요구부(a single claim)만이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실시 예(embodiments, modified forms)를 1개의 디자인개념하에 포함하여 표현할 수 있어서 부분디자인이라 하더라도 권리요구부의 범위를 달리하여 1출원으로 할 수 있다. 부분디자인에서의 디자인 단일성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단일한 발명개념 안에서 유동적으로 권리요구부와 권리불요구부만이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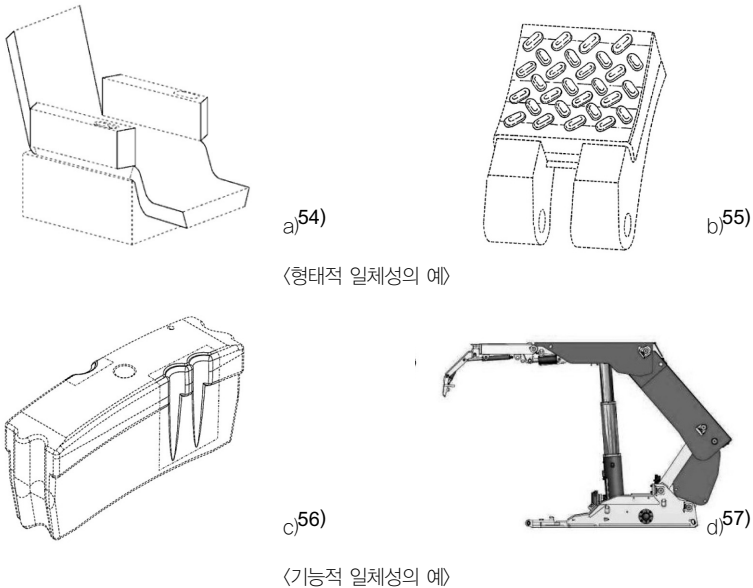
EU에서의 단일성은 특이성(individual character)과 관련되는데, “견문이 넓은 사용자에게 있어 그 디자인이 갖는 전체적인 인상이 이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대해 다른 경우”<sup>53)</sup>에 인정된다. 부분디자인에서 권리요구부 간은 단일한 특이성을 지닌 디자인으로서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앞서 다룬 한국과 일본에서의 단일성 요건인 형태적, 기능적 일체성을 사례를 통해 보기로 한다. 형태적 일체성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으로서 대칭되거나 한 쌍이 되는 등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a)의자는 실선으로 표현된 의자 측면부가 유기적인 형태적 관련성이 있어서 일체성이 인정된 것이다. b)미세분쇄기용 스윙 해머에서 돌기들은 전체적으로 규칙성 있는 일체적 배열을 이루기 때문에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된다.

기능적 일체성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전체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일체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c)잉크젯프린터의 카트리지에서 흡부분은 프린터 본체와 결합하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서 기능적 연관성 때문에 일체성이 인정되었다. d)굴착기 암에서 진한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암 지지대와 유압튜브가 기구적으로 연관하여 작동되기 때문에 기능적 일체성이 인정된 것이다.

53)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칙(Council Regulation) Article 6(1).

〈그림 5〉 부분디자인의 일체성 예



## 2. 논의

디자인의 단일성 요건에 관해 대법원은 판결에서 “디자인이란 특정한 1물품에 대한 특정한 1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1물품이란 물리적으로 1개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 구성, 거래실정 등에 따라 1물품으로 취급되고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sup>58)</sup>이라 판시하고 있다. 즉 실제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다.

부분디자인의 일체성에 대한 해석도 최근 판결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a)

54) 일본 의장등록 1378284.

55) US D684,200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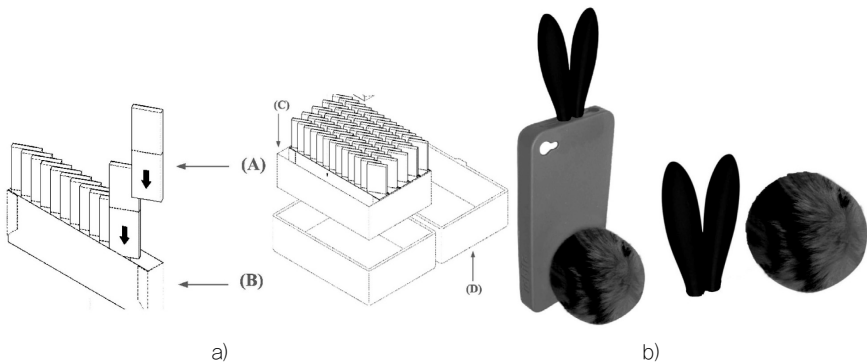
56) 특허심판원 2012. 4. 4. 2011원4891 심결. “사건 출원디자인에서 1점 색선 내에 도시된 부분은 프린터에 삽입할 때 잉크스틱 홀더 부분에 삽입되어 프린터와 잉크스틱이 정확하게 결합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들 각각의 부분은 비록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능적 일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57) 일본 의장등록 5293000-002.

58) 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

과장포장상자와 관련된 심결에서는 “물리적으로 과자 상자 안의 포장단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분리되어 거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1디자인1출원을 위배하지 않은 것”<sup>59)</sup>으로 보았다. 최근 대법원판결에서도 이러한 상거래상 수요자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b)휴대폰케이스에 관련한 대법원판결에서는 “수요자가 토끼귀와 꼬리로 인식할 것임으로 형태적 일체성이 있다.”<sup>60)</sup>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기능적, 형태적 일체성 외에 사용자관점에서 실질적 동일성을 새로운 근거로 들고 있다. 토끼귀와 꼬리털이 도면 표현상으로는 동일한 재질과 모티브를 가진 형태의 창작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수요자의 관점과 창작자의 의도가 부분디자인의 일체성 판단시 고려요소임을 환기시켰다.

〈그림 6〉 부분디자인의 단일성 요건관련 예



59) 특허심판원 2011. 7. 7. 2010원9340 심결. “① 용기 (A) 내지 (D)가 모두 과자를 포장하기 위한 동일 용도인 점, ② 용기가 전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재질이 합성수지재 및 금속재이어서 내용물인 과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용기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 ③ 용기 (A) 내지 (D)가 분리되어 거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1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3343 판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서는 꼬리부분을 ‘토끼 꼬리’ 형상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하면서 꼬리부분을 ‘꼬리’로 호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토끼귀 부분과 꼬리 부분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이를 보는 사람이 [그림 2] 부분은 ‘토끼 귀’로, 꼬리부분은 ‘토끼 꼬리’로 각각 인식할 수 있어서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하여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구법 디자인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형태적 일체성은 조형적 관점에서 창작자 의도가 담긴 형상적 특징에 의해 일체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형상 간에 공통적 조형 원리가 반영되어 창작된 디자인은 물리적 분리 여부에 상관없이 수요자에게 공통적 심미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적 일체성에서도 기구적 특징을 가진 물품의 경우 각 부품은 필연적으로 기능작동을 위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대부분 충족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심사실무에서 형태적, 기능적 일체성 요건의 엄격한 적용과정에서 창작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판단이 발생한다. 즉, 출원인은 도면상 보호범위는 창작자의 의지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 있지만, 심사실무에서는 보호범위의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타 권리와 중첩되거나 포괄적 보호범위가 될 가능성 때문에 객관적으로 입증된 일체성만이 인정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견해 차이 때문에 객관적 일체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을 때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 미국, EU 등 여러 관청에서 일체성 요건을 판단하지 않는 국제적 흐름과 최근 판결의 광범위한 인정태도를 볼 때 부분 디자인에 관한 일체성 요건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 VI. 종합 및 정책방향 제안

### 1. 종합

지금까지 한국, 미국, 일본, EU에서 부분디자인의 정의 요건, 도면 요건, 단일성 요건에 관한 심사실무의 차이를 살펴보고 논의사항을 다루었다.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의 요건에서 한국과 일본은 물화적 사고에서 부분디자인은 면과 형상처럼 물리적으로 일정범위를 차지하고 대비 대상이 되어야만 보호범위로 인정하였다. 반면, 미국과 EU에서는 선과 면을 포함하여 장식적 특징을 가지는 권리요구부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도면 요건에서 EU는 비교적 도면표현 방식이 자유롭게 인정되었고 한국, 일본, 미국에서는 일정한 도면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지만, 미국과 EU에서는 실질적 보호범위가 파악되면 이를 인정하였다. 단일성 요건에서 한국과 일본은 권리요구부 간 형태적, 기능적 일체성이 있

어야 인정되었고, 미국과 EU에서는 권리요구부 간의 일체성 자체를 판단하지 않았다.

사례를 분석해 보면, 한국과 일본의 부분디자인에 관한 심사실무는 여러 면에서 유사한 기준과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EU에서의 심사실무는 구별되었다. 즉 부분디자인 형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보호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것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도면상의 형식적 하자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부분디자인의 형식을 출원서로부터 전체디자인과 구분하여 정의 요건, 도면표현방식, 단일성 요건까지 엄격하게 적용하는 측면과 다른 것이다. 이렇듯 국내에서 부분디자인의 보호 요건에서 주요국의 추세보다 비교적 엄격한 도면의 판단기준은 부분디자인의 본질적 보호취지를 살리지 못하여 출원인의 이익을 제한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 주요국의 부분디자인 보호 요건관련 실무태도

|    | 정의 요건    |                                               | 도면 요건                                   |                                    | 단일성 요건                                     |
|----|----------|-----------------------------------------------|-----------------------------------------|------------------------------------|--------------------------------------------|
|    | 형상인식     | 정의                                            | 도면표현 방식                                 | 경계부 구분                             |                                            |
| 한국 | 물화<br>관점 | -대비대상이 되는<br>하나의 창작단위로<br>인정되는 부분<br>-면/형태 인정 | -선도(실선/파선,<br>채색, 경계선                   | -명확한<br>경계부특정<br>(1점쇄선)            | -형태적/기능적<br>일체성 판단                         |
| 미국 | 화체<br>관점 | -발명개념을 담은<br>장식적 특징의<br>청구범위<br>-선/면/형태 인정    | -선도(실선/파선,<br>음영)<br>-사진, 색채도면<br>부분 허용 | -권리요구부<br>위주의<br>실질적<br>보호범위파<br>악 | -권리요구부간<br>일체성<br>미판단                      |
| 일본 | 물화<br>관점 | -일정범위를 차지하고<br>대비대상이 되는 부분<br>-면/형태 인정        | -선도(실선/파선,<br>채색                        | -명확한<br>경계부특정<br>(1점쇄선)            | -형태적/기능적<br>일체성판단                          |
| EU | 화체<br>관점 | -장식선/윤곽/면/형태<br>인정                            | -경계, 채색, 선명<br>도, 명암<br>-권리불요구부<br>생략가능 | -상식적이고<br>실질적인<br>보호범위 파악          | -특이성<br>내에서<br>광범위한<br>창작자의<br>권리요구부<br>인정 |

## 2. 정책방향 제언

부분디자인은 전체디자인 권리와 함께 권리다발을 형성하여 타인의 디자인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부분디자인 도면의 형식적 요건을 완화하고 유사 및 창작성 같은 실체적 요건에 비중을 둔 디자인의 보호와 수요자를 위한 정책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 우선권 주장에 의한 출원의 국내심사단계에서 상이한 도면 및 보호범위의 조화를 위한 심사기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디자인의 정의 요건관련 심사기준에서 “물품형태의 실루엣을 표현한 것이 아닐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형상도 인정하여 보호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또한 “타 디자인과의 대비대상으로서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일 것”에 대해서 “출원인의 창작의도에 의해 창작이 이루어진 부분” 같은 실질적 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도면 요건에서는 부분디자인을 특징하는 다양한 방법을 확대하고, 형식적 하자보다는 실질적 효력을 가지는 보호범위를 디자인출원의 의사가 있는 도면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권리 요구부의 경계부는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도면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단일성 요건과 관련하여 일체성에 관한 완화된 정의가 필요하다. 형태적 일체성은 디자이너의 상상으로부터 나온 동일한 모티브를 가진 창작부분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수요자에게 단일하게 인식되는 창작부분이라는 객관성에 기반하여 인정해야 한다. 기능적 일체성은 해당 물품에서 통상적인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기능하는 경우 보호범위로서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김웅, 디자인보호법 사례연구, 논리와 비판, 2008.
- 노태정 · 김병진, 디자인보호법, 세창출판사, 2009.
- 안원모, “부분디자인의 유사판단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제29호(2009.8).
- \_\_\_\_\_, “부분디자인의 성립 및 등록에 있어서의 특유한 문제점 고찰”, 창작과 권리, 제61호(2010).
- 유도현, “자동차디자인의 패밀리룩 경향에 관한 사례연구”, 디자인학 연구, 제20권 제4호(2007).

조국현, 의장법, 법경사, 2002.

진선태, “디자인의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에 관한 프레임워크”, 지식재산연구, 제 8권 제1호(2013.3).

특허청, 유럽공동체디자인 보호지침 및 규칙, 2010.

\_\_\_\_\_, 헤이그협정 가입국가의 디자인제도연구 최종 보고서, 2011.

\_\_\_\_\_, 미국디자인 특허 심사기준, 2011.

\_\_\_\_\_, 일본 특허청 의장심사기준, 2011.

\_\_\_\_\_, 헤이그협정 공통규칙 · 시행세칙, 2013.

\_\_\_\_\_, 디자인심사기준, 2014.

#### 〈해외 문헌〉

Chin, Kay, H., *U.S. Design patent do it yourself*, Xlibris Corporation, 2005.

Institute of Trade Mark Attorneys &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The community designs handbook*, 2005.

OHIM, *Guidelines for examin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n registered community designs*, 2014.

Sun, Michael, “The partial design and derivative design patent practices under the R.O.C. (Taiwan) patent reform act”, *Technology law review*, Vol.8 No.1(2011.6).

#### 〈인터넷 자료〉

<http://www.wipo.int/haguebulletin>, 2014. 2. 14

<https://www.tmdn.org/tmdsview-web>, 2014. 2. 17

<http://patft.uspto.gov/netahtml/pto>, 2014. 3. 2

## A Comparative Study on Examination Practices of Drawing Manner of Representation in Partial Design - Focused on KIPO, USPTO, JPO, OHIM -

Sun Tai Jin

###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differences of drawing manner of representation concerning requirements and examination practice in partial design registration at KIPO, USPTO, JPO and OHIM. As a result, a fact that KIPO has the guideline and manner of examination similar to JPO was discovered. In the examination practice at KIPO, partial design is distinguished from whole claimed design. Also, requirements of the design definition, the clarity in drawing, and the unity of design were rigorously examined in the procedure. In USPTO and OHIM, a tendency that a scope of claim is accepted flexibly and drawing manners of representation in partial design application do not bring about a irregularity in formality check was discovered. It might be suppose that an idea which applicant can decide freely the subject matter and scope of claim in views has an influences on the manner of examination procedure. From mentioned above of the KIPO, the situation could cause several problem that is apart from the international trend of design protection and restricts applicant's profit due to weaken the purpose of design protection as an partial design registration.

Following direction of policy improvement for protection of partial design is suggested.

Firstly, in the definitional requirement of partial design, it is necessary to be interpreted extensively based on the concept that claimed portions as creative elements are defined depending on applicant's will. Secondly, in the requirement of drawing manner, it should change the viewpoint that interprets the scope of claim in views with practical and reasonable perspective. Thirdly, concerning requirement of unity of design, the unity of shape might be fulfilled while claimed portions corresponded with the created portions motivated by designer's imagination. And the requirement of unity of function could be fulfilled in case of that claimed portions have function under usually mutual relations in an article.

**Keywords** .....

partial design, scope of claim, definitional requirement, drawing manner of representation, unity of design

